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(임오경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7903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2. 5.

발의자 : 임오경 · 임광현 · 김남희

박정 · 문대림 · 위성곤

윤준병 · 신영대 · 임미애

강유정 · 한민수 · 서영교

장철민 · 박홍근 · 김용만

윤후덕 · 문정복 · 이병진

한정애 의원(19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농업인 조합원이 농협조합으로부터 받은 2천만원 이하 출자금에서 발생하는 출자배당금에 대해서 비과세를 하고 있으나, 동 제도는 2025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할 예정임.

그러나 농산물 시장개방, 잦은 가축질병 및 이상기후 등으로 농가 경영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, 특히 2000년에는 농가소득이 도시 근로자 소득의 80.6% 수준이었으나 2023년에는 67.59%로 감소하면서 그 격차가 더욱 크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임.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,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해당 세제지원을 지속해야 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배당소득 비과세를 통해 농업인 재산형성을 지원하고 출자금

증대를 통해 농협조합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어 농촌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동 제도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함(안 제88조의5).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8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2025년 12월 31일”을 “2030년 12월 31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”을 “2031년 1월 1일부터 2031년 12월 31일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호 중 “2027년 1월 1일”을 “2032년 1월 1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<p><u>12월 31일까지</u> 받는 배당소득 등: 100분의 5</p> <p>2. <u>2027년 1월 1일</u> 이후 받는 배당소득등: 100분의 9</p>	<p><u>12월 31일</u>----- -----</p> <p>2. <u>2032년 1월 1일</u>----- -----</p>
--	--